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봉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3
----------	------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6일  
발 의 자 : 오봉수 의원(1명)  
찬 성 자 : 문형주, 신건택, 김동욱,  
김창원, 이종필, 주찬식,  
문종철, 김동율, 유광상,  
조상호, 이현찬, 김진철,  
최영수 의원(13명)

## 1. 제안이유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하는 한편,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 나. 분과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사문화된 분과위원회 지원 조직인 청계천추진반을 폐지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p> <p>① ~ ④ (생략)</p> <p>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 -----.</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각 분과와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u></p> <p>1. ~ 3. (생략)</p> <p>④ <u>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소속 부서의 과장 및 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계천(T/F팀)추진반을 운영한다.</u></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별첨 2]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오봉수